

전기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지침
(공동주택, 일반건축물, 업무시설, 도시기반시설)

2026. 06

운용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건설관리처	박소영	055-922-5271
	한다은	055-922-5274
	전수빈	055-922-5272

전기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지침 개정

1. 개정 이유

가. 공공주택시설처 지침개정 요청사항 반영

[「전기설계용역 개선방안 수립 알림」(공공주택시설처-1348(2025.03.11.))]

나. 관련 지침간 평가기준 통일

다. 평가 기준 명확화 및 'LH 내규 제·개정 가이드라인'에 따른 자구 수정

2. 주요골자

가. 평가항목 '1. 참여기술인력'(50점) 중 '나. 경력' 기간 산정기준 완화

- 책임기술자: 경력 16년 이상[10점] → 경력 14년 이상[10점]
- 참여기술자: 경력 13년 이상[5점] → 경력 12년 이상[5점]

나. 평가항목 '1. 참여기술인력'(50점) 중 '다. 실적' 기간 산정기준 완화

- 책임기술자: 실적 18년 이상[15점] → 실적 16년 이상[15점]
- 참여기술자: 실적 18년 이상[10점] → 실적 16년 이상[10점]

※ (개정예고)기술인 경력 및 실적기간 산정기준 단계적 완화 예정

- 경력평가: 책임기술자 12년^(27년)이상[10점], 참여기술자 10년^(27년) 이상[5점]
- 실적평가: 책임기술자 15년^(27년)이상[15점], 참여기술자 15년^(27년) 이상[10점]

다. 관련 지침간 통일

- '감점' 항목 중 품질미흡통지서 감점 기준 통일
(전기공사 감리용역 및 건설사업관리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 지침 준용)

라. 기타사항

- 공고일 기준 기간 산정 시 공고일 포함 여부 명확화
- 제4조 및 제4조의2 평가방법 분류에 따른 업무흐름도 세분화
- 업무중첩도 평가 시 참여기술인의 감리원 배치현황 확인 추가
- 평가 기준 항목별 세부 사항 명확화 및 기타 자구 수정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전기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지침	지침번호	제3609호
		시행일	2026.07.01
		담당부서	건설관리처
		담당자	박소영 한태은 전수빈

개정연번	개정일자	지침번호	주요내용 및 개정사유
제정	2009.12.30	제228호	양 공사의 적용지침을 검토 반영한 통합지침 마련하여 업무의 효율성 향상
1차 개정	2010.12.30	제409호	입찰참가자의 선정절차, 부실별점부과등의 기준을 개정·보완하여 투명성 및 고객만족도를 제고코자 함
2차 개정	2012.6.22	제639호	- 입찰절차 개선 - PQ심사후 기준점수 통과업체에게 입찰참가자격 부여 - PQ평가대상 시설의 정비(현상설계공모 관련내용 삭제) - 투명·공정한 심사기준 수립을 위한 평가기준 정비 - PQ신청서 작성 및 제출 편의성 제고 - PQ적격자의 입찰불참 시 제재조치 신설
3차 개정	2013.12.30	제970호	-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기준 변경 - 투명·공정한 심사기준 수립을 위한 평가기준 정비 - 업무중첩도 열람 및 이의신청 기회 부여 - 제출물 강화
4차 개정	2014.08.22	제1085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개정내용 반영 및 명칭변경
5차 개정	2017.12.27	제1772호	재검토기한 연장
6차 개정	2020.11.19	제2401호	- 건축 설계공모 전기설계분야 평가기준 신설 - 관련법령(전력기술관리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등) 개정사항 반영
7차 개정	2023.11.10	제3038호	- PQ효율화 적용 근거 조항 신설 - 관련법령 개정사항 반영(3.신용도, 4.기술개발 투자실적)
8차 개정	2024.01.31	제3107호	유사용역 수행실적, 업무중첩도, 감점 평가기준 변경
9차 개정	2025.04.14	제3362호	- 참여기술인력 경력 및 실적기간 산정기준 완화 - 용역 수행성과 평가표 및 감점 세부기준 변경 - 명확한 심사기준 수립을 위한 평가기준 정비
10차 개정	2026.06.25	제3609호	- 참여기술인력 경력 및 실적기간 산정기준 완화('26년) - 품질미흡통지서 감점기준 통일

목 차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사업수행능력 평가 업무흐름 및 평점기준 등
제4조	제출서류
제4조의2	자기평가서 및 평가서류확인
제5조	입찰참가자격자 선정 및 결격사항
제6조	용역의 참여분야 분류
제7조	유사용역의 인정범위 등
제8조	기타사항
제9조	재검토기한

부 칙

- [별표 1] 전기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업무흐름도(제3조제1항 관련)
-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방법(제3조제2항 관련)
- [별표 3] 유사용역 인정범위(제7조제1항 관련)
- [별표 4]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및 작성안내(제4조제1항 관련)
- [별표 5] 제출서류 목록표(제4조제1항, 제4조의2 제1항 관련)

전기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별표 1의3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전기설계용역에 적용할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과 입찰에 참가할 자의 선정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가 시행하는 공동주택, 일반건축물, 업무시설, 도시기반시설 등의 전기설계용역의 입찰 또는 설계공모에 참여코자 하는 업체(이하 “용역업체”라 한다)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이하 “PQ”라 한다)평가에 적용한다. 다만, 입찰공고 및 과업내용서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사업수행능력 평가 업무흐름 및 평점기준 등)

- ① PQ평가의 업무흐름은 별표 1과 같다.
- ② PQ평가의 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 ③ PQ평가는 평가항목별(감점 포함)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한다.
- ④ PQ평가점수는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최종단계 점수를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산정한다.
- ⑤ 참여기술인력은 용역업체가 지정한 책임기술자 1인 및 전력기술인 1인에 대하여 평가한다. 다만, 전기와 정보통신분야 용역을 통합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자격 또는 등급 평가에 한하여 용역업체가 지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 1인을 추가하여 평가한다.
- ⑥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할 경우 공동이행업체에 대한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평가항목			평가방법
1. 참여기술인력			단순합산 평가
2. 유사용역 수행실적	실적금액, 실적건수		공동도급비율에 의한 합산평가
	용역 수행성과 평가		평가 후 공동도급비율에 의한 합산
3. 신용도	영업정지	참여업체	평가 후 공동도급비율에 의한 합산
		참여기술인	단순합산 평가
	신용평가등급		평가 후 공동도급비율에 의한 합산
4. 기술개발 투자실적	개발실적		평가 후 공동도급비율에 의한 합산
	기술개발투자실적		공동도급비율에 의한 합산평가
5. 업무중첩도			단순합산 평가
6. 감점	부실벌점	참여업체	평가 후 공동도급비율에 의한 합산
		참여기술인	단순합산 평가
	입찰불참, 품질통지서		평가 후 공동도급비율에 의한 합산

- 주1) 단순합산 평가는 지분율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평가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
주2) 공동도급비율에 의한 합산평가는 지분율을 반영한 평가항목별 지표를 합산하여 평가
주3) 평가 후 공동도급비율에 의한 합산은 업체별 평가 후 평가점수에 지분율을 반영하여 합산
주4) “공동이행업체” 평가는 공동이행업체간 일정범위내에서 기술자구성, 사업실적 등의 상호보완을 인정하고 이를 종합평가함.
주5) 입찰불참에 따른 감점 평가는 용역종류에 구분없이 사업자별로 평가함.

제4조(제출서류)

- ① PQ평가에 참여코자 하는 용역업체는 입찰·공모 공고 시 지정한 일시 까지 별표 4의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및 작성안내”에 따라 별표 5의 별지 제2호서식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평가신청서 일체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설계공모방식으로 설계자를 선정하는 경우 전기설계용역에 참가하는 자는 작품제출 시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를 제출하고, 당선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로 제1항의 평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작성하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에는

계약건명, 계약금액, 거래계좌 및 분담내용 등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③ 참여기술인력의 자격 또는 등급, 경력 및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는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④ 평가대상 참여기술인력은 용역입찰·공모 공고일 현재 용역업체 소속 임직원으로서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용역업체는 한국전기기술인협회가 발행한 업체의 유사용역수행실적, 영업정지, 업무중첩도, 감점(부실별점) 확인서와 참여기술인력의 감점(부실별점)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용역업체의 현재 진행중인 설계용역이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 미신고 되어있는 경우에는 별표 5의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발주부서업무수행확인서에 해당 설계용역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제출서류 중 자격증사본,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등을 제외한 기타서류는 입찰·공모 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의2(자기평가서 및 평가서류확인)

① 제4조 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용역업체가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점수(이하 “자기평가서”라 한다)로 평가할 수 있다.

② 다만, 위 항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하는 경우 개찰 이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정하여 별표5에서 정한 평가서류 일체를 받아 평가점수의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③ ①항에 따라 실시한 평가로서 적격심사 대상자의 PQ평가 증빙서류 검증 결과, 제5조의 기준에 따른 결격사유 발생 시 차순위자를 심사할 수 있다.

제5조(입찰참가적격자 선정 및 결격사항)

① PQ평가결과 심사부서평점이 80점 이상인 용역업체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한다. 다만, 용역의 성질, 내용 등을 고려하여 입찰참가적격 점수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별도 공지한다.

② 제4조제2항 설계공모방식의 전기설계분야 PQ평가 결과 부적격(80점 미만)일 경우 1회에 한해 교체 요구하고,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

나, 작품제출 시 제출한 자기평가 점수와 격차가 상당할 경우 공종별 주관부서에서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여 제제조치 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1. 입찰·공모 공고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2. 접수마감일시 후에 PQ평가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3. 별표 2에 따른 PQ평가 세부기준의 요구조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PQ평가 세부항목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
4. 동일입찰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5. 공고일 현재 파산신청 중에 있거나 또는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6. 공고일 현재 경영부실로 부도 등이 발생하여 금융거래가 정상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
7. 공고일 현재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④ PQ평가 신청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관계기관에 통보 조치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⑤ 입찰참가자격자로 선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찰에 불참하였을 경우에는 평가기준에 따라 감점한다.

제6조(용역의 참여분야 분류)

①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용도별 건축물 종류에서의 공동주택으로서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참여분야분류표 중 “건축물시설”에 해당하는 분야 중 주거시설을 말한다.

② “일반건축물시설”이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참여분야분류표 중 “건축물시설”에 해당하는 분야 중 주거시설을 제외한 각각의 시설을 말한다.

③ “업무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용도별 건축물

의 종류에서의 업무시설로서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의 참여분야분류표 중 “건축물시설”에 해당하는 분야 중 업무시설을 말한다.

④ “도시기반시설”이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참여분야분류표의 “공공시설”에 해당하는 분야 중 도로시설, 교량시설, 터널시설과 “에너지·환경시설”에 해당하는 분야 중 쓰레기소각시설, 오·폐수 처리시설, 상·하수도·정수시설, 공원시설을 말한다.

제7조(유사용역의 인정범위 등)

- ① 유사용역의 인정범위는 입찰·공모공고 시 별도로 정한 경우 외에는 별표 3의 시설물 분류에 따른다.
- ② 업체 또는 참여기술인력의 경력 및 실적 등의 평가 시 협회에서 확인한 확인서에 참여분야, 직무분야, 담당분야 및 담당업무 등의 해당란에 명확히 기재된 용역만 인정되며, 하나의 항목이라도 누락되었거나 2개 이상의 업무가 기재된 경우나 참여사업명이 불분명한 경우 인정되지 않는다.

제8조(기타사항)

- ① 평가기준일은 달리 정함이 없는 경우 입찰·공모공고일(이하 “공고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공고일 이후 낙찰자 결정전까지의 기간 중에 평가서류 제출업체의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가 발생할 경우에는 LH 「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제6조에 따르며, 신용도 및 부실별점 관련 감점사항이 발생된 때에는 PQ평가 완료일을 기준으로 처리한다.
- ②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LH 「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전기공사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지침」, 전력기술관리법령, 전기통신공사법령을 준용하며 공사의 특성에 따라 이 지침을 적용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과업내용서 및 입찰공고문에 따른다.
- ③ 낙찰자로 선정된 용역업체의 기술인은 반드시 해당 용역 수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PQ평가 참여기술인력이 퇴사, 사고 등으로 해당 용역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LH의 승인을 받아 당초 참여기술인 심사 시 취득한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기술인으로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LH의 요구에 응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취소(해지)할 수 있다.

또한, 기술인이 낙찰자 선정 전 사망·퇴사 등으로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④ 적격심사 대상자 증빙서류 제출 시 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되어 확인이 안 될 경우 불리한 평가를 적용한다.

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는다.

⑥ 평가에 따른 기간계산은 달리 정함이 없는 한 1월은 30일, 1년은 365일로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지침의 존속기한 설정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이 지침 시행 후의 법령이나 사규,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9년 0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9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지침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12.3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지침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6.2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지침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12.3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지침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8.2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지침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12.2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지침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고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11.1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지침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고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3.11.1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3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지침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고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4.1.3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지침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고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5.04.1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5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지침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고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6.06.25)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6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지침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고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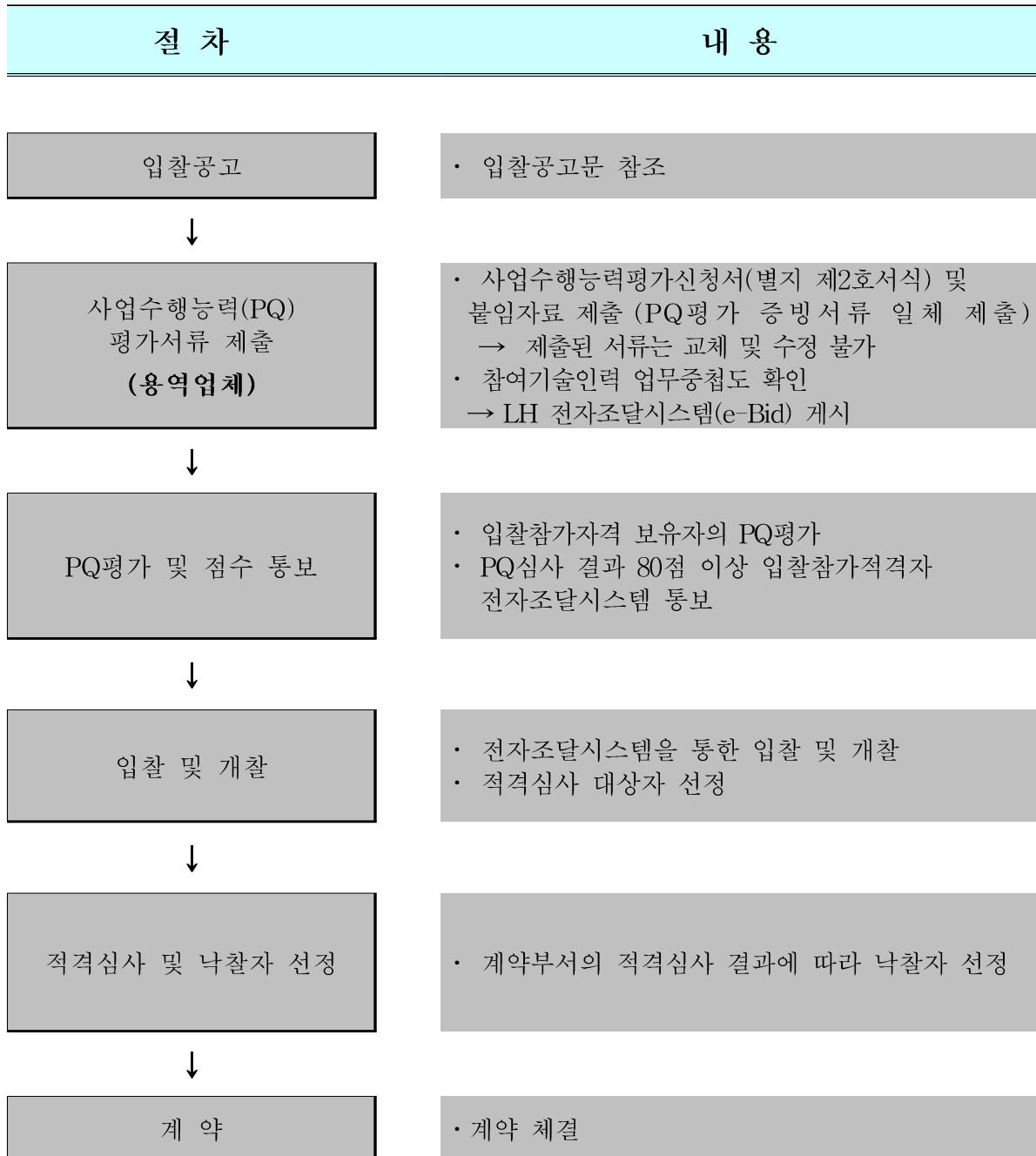
차 례

[별표1] : 전기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업무흐름도	13
[1] 전기설계용역 지구(설계공모 제외)	13
[2] 설계공모 지구	15
[별표2] :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방법	16
[1] 평가기준	16
[2] 평가방법	17
[별표3] : 유사용역 인정범위	25
[별표4] :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및 작성안내	26
[별표5] : 제출서류 목록표	28
[별지 제1호서식] 표지서식 예시	29
[별지 제2호서식] 사업수행능력평가신청서	30
[1] 종합평가표	31
[2] 항목별 세부 평가	32
1. 참여기술인력 평가	32
2.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	34
3. 신용도 평가	36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평가	37
5. 업무중첩도 평가	38
6. 감점 평가	38
[별지 제3호서식] 발주부서 업무수행확인서	40
[별지 제4호서식] 재정상태검토보고서	41

[별 표 1] 전기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업무흐름도 (제3조제1항 관련)

[1] 전기설계용역 지구(설계공모 제외)

전기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업무흐름도
(공동주택, 일반건축물, 업무시설 및 도시기반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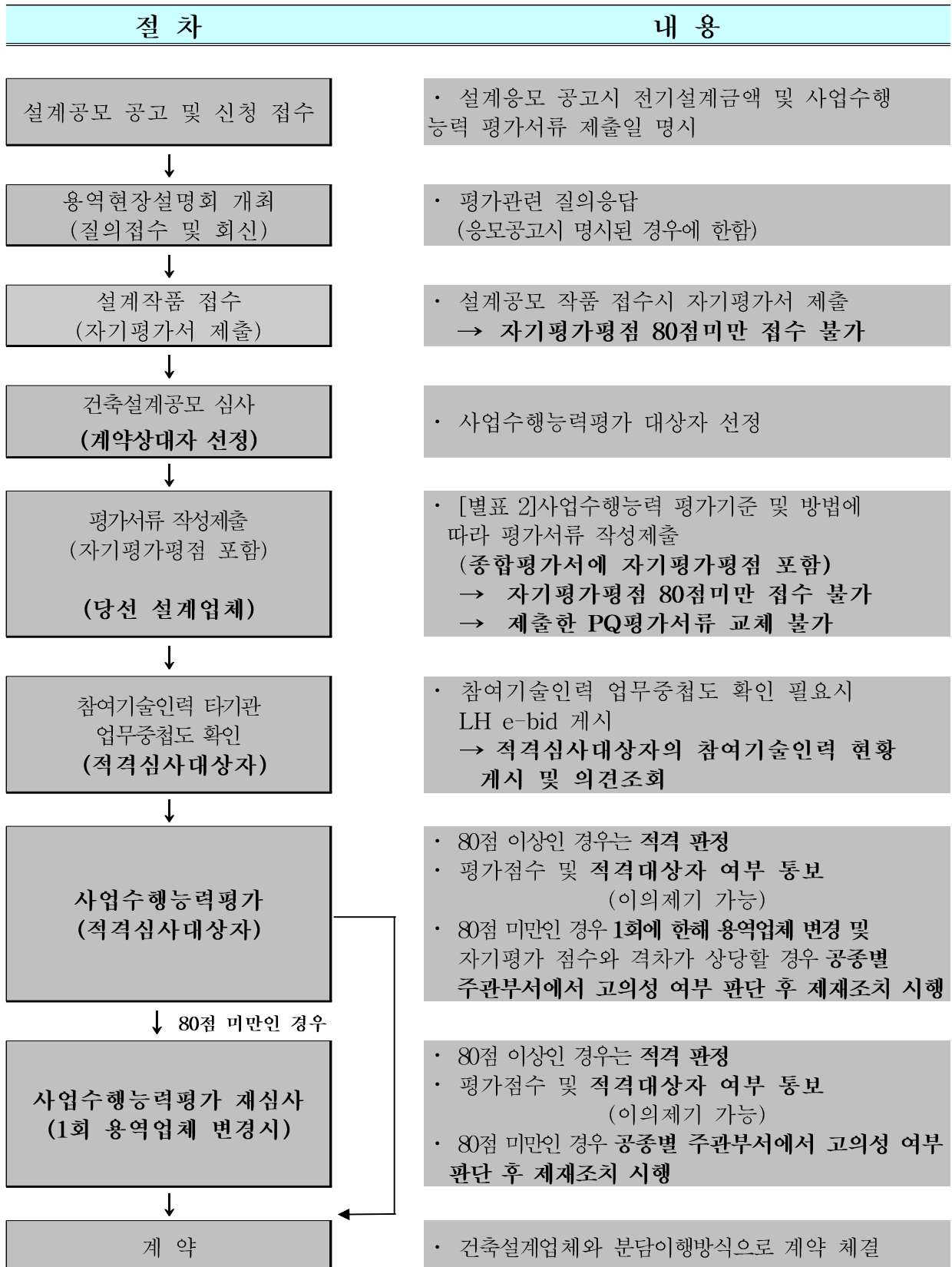


단, 제4조의2 ①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 업무흐름도는 아래를 따른다.

절 차	내 용
입찰공고	입찰공고문 참조
↓	
사업수행능력(PQ) 평가서류 제출 (용역업체)	사업수행능력평가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및 붙임자료 제출 (종합평가표에 자기평가점수 포함) → 제출된 서류는 교체 및 수정 불가
↓	
PQ평가 및 점수 통보 (자기평가점수 반영)	- 입찰참가자격 보유자의 PQ평가 - PQ평가 결과 80점 이상 입찰참가자격자 전자조달시스템 통보
↓	
입찰 및 개찰	-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입찰 및 개찰 - 적격심사 대상자 선정
↓	
적격심사대상자 PQ평가 검증	- 적격심사대상자 PQ평가 증빙서류 제출 및 검증 실시 - 기한내 미제출시 심사대상에서 제외 - 적격심사 대상자 참여기술인력 업무중첩도 확인 → LH 전자조달시스템(e-Bid) 게시
↓	
적격심사 및 낙찰자 선정	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낙찰자 선정
↓	
계 약	계약 체결

[2] 설계공모 지구

전기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업무흐름도 (건축 설계공모 전기설계분야)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방법(제3조제2항 관련)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방법(제3조제2항 관련)

[1] 평가기준

평 가 항 목	세 부 사 항	평가방법	배 점																				
1. 참여기술인력	<table border="1"> <tr> <th>구 분</th><th>책임 기술자</th><th>참여 기술자</th><th>계</th></tr> <tr> <td>계</td><td>30</td><td>20</td><td>50</td></tr> <tr> <td>자격 또는 등급</td><td>5</td><td>5</td><td>10</td></tr> <tr> <td>경 력</td><td>10</td><td>5</td><td>15</td></tr> <tr> <td>실 적</td><td>15</td><td>10</td><td>25</td></tr> </table> - 자격 또는 등급 - 경력 - 실적	구 분	책임 기술자	참여 기술자	계	계	30	20	50	자격 또는 등급	5	5	10	경 력	10	5	15	실 적	15	10	25	절대평가 절대평가 절대평가	(50) 10 15 25
구 분	책임 기술자	참여 기술자	계																				
계	30	20	50																				
자격 또는 등급	5	5	10																				
경 력	10	5	15																				
실 적	15	10	25																				
2. 유사용역 수행실적	- 최근 5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 금액 - 최근 5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 건수 - 용역 수행성과 평가	절대평가 절대평가 절대평가	(15) 8 5 2																				
3. 신 용 도	- 영업정지 - 신용평가등급	절대평가 절대평가	(10) 7 3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 개발실적 - 기술개발투자실적 - 교육실적	절대평가 절대평가 절대평가	(15) 4 8 3																				
5. 업무중첩도	- 책임기술자 - 참여기술자	절대평가 절대평가	(10) 6 4																				
6. 감점	- 부실벌점 - 입찰 불참 - 품질미흡통지서	절대평가 절대평가 절대평가	최대 -5점																				
합 계			100																				

[2] 평가방법

1. 참여기술인력 (50점)

가. 자격 또는 등급 (10점)

등 급	책임기술자 (기술사)	참여기술자	
		전력기술인	정보통신기술자
특급기술자	5점	3 점 (5 점)	2 점
고급기술자	-	2.5 점 (4.5 점)	2 점
중급기술자	-	2 점 (3.5 점)	1.5점
초급기술자	-	1 점 (1 점)	1 점

- ① 참여기술인력의 자격 또는 등급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2항 관련 별표 1에 따른 전력기술인의 범위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 6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의 범위에 따라 등급별 및 참여인력별로 차등 평가한다. ()배점은 정보통신설계용역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 전력기술인만 평가시 적용한다.
- ② 책임기술자는 공동주택, 일반건축물 및 업무시설은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도시기반시설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분야 기술사이어야 한다.
- ③ 책임기술자는 대표사에서 선임하여야 하고, 참여기술자에는 정보통신설계용역이 포함되는 경우 정보통신기술자가 반드시 1인이상 참여하여야 하며, 참여기술인력은 상호간에 겸임할 수 없다.
- ④ 해당용역 입찰공고시 해당용역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등급 및 자격요건을 제시할 수 있으며, 제시한 등급 및 자격요건 미달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경력 (15점)

- 책임기술자 (10점)

경 력	<u>14년</u> 이 상	<u>10년이상</u> <u>14년미만</u>	<u>6년이상</u> <u>10년미만</u>	6년미만
배 점	10점	9점	8점	7점

- 참여기술자 (5점)

경 력	<u>12년</u> 이 상	<u>8년이상</u> <u>12년미만</u>	<u>5년이상</u> <u>8년미만</u>	5년미만
배 점	5점	4점	3점	2점

- ① 참여기술인력 경력은 자격취득시기에 관계없이 경력확인서의 참여분야가 다음의 **유사용역 범위**에 해당하고, 담당분야 및 담당업무 란에 **설계 또는 설계감리**인 용역수행 참여기간만 인정하며, 중복하여 작성된 기간은 인정하지 않는다.

[별표 3 참조]

- 공동주택, 일반건축물 및 업무시설 : 건축물시설
 - 도시기반 : 도로, 교량, 터널, 쓰레기소각, 오·폐수처리, 상·하수도·정수시설, 공원시설 및 건축물시설
- ② 기술자 경력은 경력확인서(한국전기기술인협회 발급)로 평가하며, 현재 진행중인 설계용역이 협회에 미신고된 경우에는 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③ 경력확인서의 직무분야(전기), 참여분야, 담당분야 및 업무 란에 명확히 기재된 용역만 인정하며, 기재란이 누락되었거나 2개 이상의 업무가 기재된 경우 또는 참여사업명이 불분명한 경우(참여사업명이 공란이거나 근무부서명이 기입되어 있는 경우 등)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④ 참여기술인력이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소속직원으로서 기본설계, 실시설계, 설계감리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감독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으로 인정한다.

다. 실적 (25점)

유사용역 참여기간	16년이상	12년이상 16년미만	9년이상 12년미만	5년이상 9년미만	5년미만
책임기술자	15	14	13	12	11
참여기술자	10	9	8	7	6

- ① 참여기술인력 실적은 다음의 유사용역 범위에 해당하는 최근 5년간 설계 또는 설계감리 용역수행 참여기간만 인정하고, 중복작성 기간에 대해서도 인정하며, 실적 인정 비율은 다음과 같다. [별표 3 참조]
- 해당용역이 공동주택인 경우: 주거시설(21) 실적은 100%,
주거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시설(20, 22-29) 실적은 60% 적용
 - 해당용역이 일반건축물시설(20, 22-29)인 경우: 해당 일반건축물시설 실적은 100%,
해당 일반건축물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시설 실적은 60% 적용
예시) 해당용역이 업무시설(22)일 경우: 업무시설(22) 실적은 100%,
업무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시설(20-21, 23-29) 실적은 60% 적용
 - 해당용역이 도시기반인 경우: 도로시설(30), 교량시설(31), 터널시설(32), 쓰레기소각시설(41), 오·폐수처리시설(42), 상수도·하수도·정수 시설(43), 공원시설(44) 실적은 100%, 건축물시설(20-29) 실적은 60% 적용
예시) 공고일이 '26.01.01일인 경우 '21.01.03~'26.01.01 기간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
- ② 기술자 실적은 경력확인서(한국전기기술인협회 발급)로 평가하며, 현재 진행중인 설계용역이 협회에 미신고된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③ 경력확인서의 직무분야(전기), 참여분야, 담당분야 및 업무란에 명확히 기재된

용역만 인정하며, 기재란이 누락되었거나 2개 이상의 업무가 기재된 경우 또는 참여사업명이 불분명한 경우(참여사업명이 공란이거나 근무부서명이 기입되어 있는 경우 등)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④ 참여기술인력이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소속직원으로서 기본설계, 실시설계, 설계감리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감독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의 실적으로 인정한다.

2. 유사용역 수행실적 (15점)

- 실적금액 (8점)

수행 실적	150% 이상	125% 이상 150% 미만	100% 이상 125% 미만	100% 미만
점 수	8	7	6	5

- 실적건수 (5점)

실적 건수	5건이상	4건이상 5건미만	3건이상 4건미만	2건이상 3건미만	2건미만
점 수	5	4	3	2	1

- 용역 수행성과 평가 (2점)

평가 점수	(A등급) 90점 이상	(B등급) 80점 이상	(C등급) 70점 이상	(D등급) 70점 미만
점 수	2	1.5	1	0.5

- ① 유사용역 수행실적 금액은 입찰공고일 기준 용역업체가 최근 5년간 준공한 1천만원 이상의 전력시설물 설계용역과, 현재 수행중인 설계용역 중 기성부분이 1천만원 이상인 전력시설물 설계용역으로 해당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설계용역의 기성부분 누계실적으로서 해당 설계용역비(설계가격) 대비 누계실적을 백분율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 ② 유사용역 수행실적 건수는 입찰공고일 기준 용역업체가 최근 5년간 준공한 1천만원 이상의 전력시설물 설계용역과 현재 수행중인 설계용역 중 기성부분이 1천만원 이상인 전력시설물 설계용역으로 해당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설계용역의 건수를 적용하되 현재 수행중인 설계용역의 건수는 기성비율을 적용한다.

예시) 공고일이 '26.01.01일인 경우 '21.01.03~'26.01.01 기간에 발생한

실적금액(준공·기성누계)을 모두 인정

- ③ 참여업체 유사용역실적 금액 및 건수의 인정 비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해당용역이 공동주택인 경우: 주거시설(21) 실적은 100%,
주거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시설(20, 22-29) 실적은 60% 적용
- 해당용역이 일반건축물시설(20, 22-29)인 경우: 해당 일반건축물시설 실적은 100%,

해당 일반건축물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시설 실적은 60% 적용

예시) 해당용역이 업무시설(22)일 경우: 업무시설(22) 실적은 100%,

업무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시설(20-21, 23-29) 실적은 60% 적용

· 해당용역이 도시기반인 경우: 도로시설(30), 교량시설(31), 터널시설(32), 쓰레기소각시설(41), 오·폐수처리시설(42), 상수도·하수도·정수 시설(43), 공원시설(44) 실적은 100%, 건축물시설(20-29) 실적은 60% 적용

- ④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설계용역수행확인서(한국전기기술인협회 발급)로 평가한다. 다만, 현재 진행중인 설계용역 중 설계용역발주자가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2제1항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 각 호의 자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발주부서업무수행확인서(별표 5의 별지 제3호서식)의 기성부분 누계실적도 인정한다.
- ⑤ 협회에서 확인한 유사용역의 수행실적의 기재란이 누락되었거나 2개 이상의 업무가 기재된 경우 또는 참여사업명이 불분명한 경우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⑥ 유사용역 수행실적 중 1천만원 이상인 용역을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실적금액 및 건수에 지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⑦ 입찰공고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실적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원칙으로 하며, 제1항의 해당 설계용역비는 해당용역 설계가격 중 전기설계금액을 의미한다.
- ⑧ 용역 수행성과 평가점수는 사업자별로 최근 3년간 획득한 LH 전기설계용역 준공평가 결과의 산술평균한 점수를 적용하여 평가하며, 최근 3년간 평가결과가 없는 경우 B 등급을 적용한다.
- ⑨ 용역 수행성과를 평가할 경우 입찰공고문에 별도 명시하고, 입찰공고문에 별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배점한도(A 등급)를 적용한다.
- ⑩ 용역 수행성과 평가점수는 제6조(용역의 참여분야 분류)에 따라 구분하여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에 입찰 참여시 평가에 적용한다.

3. 신용도 (10점)

가. 영업정지 (7점)

① 설계업체(4점)

설계업체가 최근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한다.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② 참여전력기술인(3점)

참여기술인력이 최근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2점씩 감점한다.

(3월 미만인 경우 3월로 계산)

나. 신용평가등급(3점)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신용도 평가는 다음과 같이 행한다.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점수
BBB+ 이상	A3+ 이상	BBB+ 이상	3.0
BBB0, BBB-	A30, A3-	BBB0, BBB-	2.9
BB+, BB0, BB-	B+, B0	BB+, BB0, BB-	2.8
B+, B0, B-	B-	B+, B0, B-	2.7
CCC+이하	C 이하	CCC+이하	2.6

- ①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공고일 이전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인정)에 있는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 등급(위의 신용 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 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 하여 작성한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이하 “등급 확인서”라 한다)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② 이행능력심사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 ③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 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4.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 (15점)

가. 개발실적 (4점)

- ① 전력기술과 관련하여 특허등록 결정,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 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항에 따른 전력기술에 관한 **신기술 인증**을 받은 경우 **신기술 인증은 최초 지정일, 특허·실용신안은 최초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다.
 - 전력기술에 관한 신기술 인증 : 건당 2점
 -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 : 건당 1점
 - 전력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건당 0.5점

구분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20년이하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신기술 인증	100%	80%	-

- ② 제1항의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신기술 인증,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한다.
(4점을 초과할 경우 4점으로 인정)
- ③ 전력기술에 관한 신기술 인증, 특허, 실용신안은 설계업체(대표자 포함)가 직접 개발한 실적으로 설계업체 명의로 최초지정 또는 등록된 경우에 대하여 인정(설계업체에 소속된 직원이 개발·보유하고 있는 기술개발은 제외)한다.
- 직접 개발한 실적이라 함은 출원자(업체 또는 업체 대표자)와 특허권자가 같은 경우를 말하며, 출원권을 매입(투자)하여 최초 특허권자가 된 경우에는 개발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특허등록원부의 특허료란에 기재된 유지기간이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해야 하며, 최초지정자 또는 최초출원자가 업체와 현 대표자로 구성된 경우는 1인으로 간주된다.
- ④ 위의 개발실적은 최초지정자 또는 최초출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점수를 지정자 또는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한다.

나. 기술개발투자실적 (8점)

- ① 해당 설계업체의 재무재표상의 경상개발비에 명시된 전력기술개발을 위하여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 등에 투자한 비용을 말하며, 최근 3개년도(재정상태건실도 평가기준년도이하 3년) 전력기술개발 투자실적 및 전기부문 총매출액(해당업체의 최근 3개년도 손익계산서상의 전기설계·설계감리·공사감리부문 총매출액)비율로 평가한다. 다만, 업체의 설립년수가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출된 해당년수를 기준으로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 최근 3개년도 전력기술개발투자액/최근 3개년도 전기부문 총매출액

구 분	3%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점 수	8	7.2	6.4	5.6	4.8

- ②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 ③ 해당 설계업체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도 기술개발투자 실적 및 전기부문의 총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식 별표 5의 별지 제4호서식 재정상태검토보고서를 제출한다.(공인회계(세무)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포함)

다. 교육실적 (3점)

- ① 참여기술인력이 최근 3년간 「전력기술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서 실시하는 전기설계관련 교육훈련(단, 철도신호과정은 불인정)을 받은 경우 다음기준에 따라 합산 적용 (소수점 셋째 자리 반올림)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 3 점
- 1주이상 2주미만 "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 1.5점

예시) 공고일이 '26.01.01일인 경우 수료일이 '23.01.03~'26.01.01 기간 이내이면 인정

② 이 경우 교육일수 산정은 1주를 5일 기준으로 한다.

5. 업무 중첩도 (10점)

참여기술인력이 입찰공고일 현재 LH에서 수행중인 설계용역 중(건축설계용역에 포함된 전기설계의 분담이행용역은 제외) 전기설계용역비가 3천만원 이상이며, 잔여 과업기간이 90일 이상이고, 입찰공고일 기준 잔여용역금액의 비율이 20퍼센트 초과하는 용역에 대하여 산정 한다.

① 책임기술자(6점), 참여기술자(4점)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 책임기술자 : 다른 설계용역과 중복건수 1건당 0.3점씩 감점
- 참여기술자 : 다른 설계용역과 중복건수 1건당 0.2점씩 감점

② 타 용역에 상주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설계용역 책임 및 참여 기술자로 참여할 수 없으며, 중복 배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력기술인 업무중첩도 확인서와 감리원 업무중첩도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 미신고된 용역에 대해 용역업체는 참여기술자, 계약기간, 금액, 기성금을 확인할 수 있는 별표 5의 별지 제3호서식 발주부서업무수행확인서 또는 “최초·변경 계약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현재 수행중인 설계용역 중 용역업체의 귀책사유 없이 중지중인 용역 및 최초 계약기간을 초과하여 수행중인 용역 건은 업무중첩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계약현황과 중단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 PQ평가서류 제출 시 업무중첩에 해당하는 용역(미신고건 포함)에 대하여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업무중첩에 해당되는 용역의 오류, 누락사항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해당 기술자의 중첩도 평가점수는 0점 처리한다.

※ 용역 건별로 착공신고서에 전기분야 참여기술인력 명단으로 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두 건수에 합산하여 산정한다.

⑤ 각 업체별 참여기술자의 업무중첩사항에 대하여 다른 설계업자가 열람 및 이의신청 할 수 있도록 LH 전자조달(e-Bid)에 게시한다.(LH 전자조달>심사>심문고)

6. 감점 (최대 -5점)

가. 부실별점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력이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실별점을 받은 경우에는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력의 누계평균부실별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감점한다.

① 1점이상 2점미만인 경우 0.2점 감점

- ② 2점이상 5점미만인 경우 0.5점 감점
- ③ 5점이상 10점미만인 경우 1점 감점
- ④ 10점이상 15점미만인 경우 2점 감점
- ⑤ 15점이상 20점미만인 경우 3점 감점
- ⑥ 20점이상인 경우 5점 감점

나. 입찰 불참

입찰참가자격자로 선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찰에 불참한 경우 해당용역 입찰마감일로부터 1년간 해당용역과 동일한 용역에 입찰참여시 감점 적용한다. 입찰 불참자에 따른 감점 기준을 적용할 경우 입찰공고문에 별도 명시한다.

- ① 1회 불참한 자 : 0.5점 감점
- ② 2회이상 불참한 자 : 1점 감점

다. 품질미흡통지서

LH에서 발급하는 품질 미흡통지서의 유효기간 동안 발급된 누계횟수에 따라 감점을 부여한다.

- 1회당 : 1.0점 감점 부여(최대 3.0점)
- 유효기간
 - 용역업체 : 발급일 기준 1년간 유효(종료일 포함)
 - 기 술 자 : 발급일 기준 1년간 유효(종료일 포함)

<품질 우수통지서>

LH 발급횟수에 따라 가점 부여하며, 품질미흡통지서 감점상쇄용으로만 적용

- 1회당 : 1.0점 감점 상쇄
- 유효기간
 - 용역업체 : 발급일 기준 1년간 유효(종료일 포함)
 - 기 술 자 : 발급일 기준 1년간 유효(종료일 포함)

[별표 3] 유사용역 인정범위(제7조 제1항의 관련)

유사용역 인정범위

※ 참여분야 분류표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름

발 송 변 배 전 시 설 [1]	10. 원자력 11. 화력 12. 수력·소수력 13. 열병합 14. 풍력 15. 태양광 16. 송 전 17. 변 전 18. 배 전 19. 그 밖의 발송변배전시설	건 축 물 시 설 [2]	20. 공공건물 21. 주거시설 22. 업무시설 23. 판매시설 24. 숙박시설 25. 의료시설 26. 종교시설 27. 체육시설 28. 교육·연구시설 29. 그 밖의 건축시설	공 공 시 설 [3]	30. 도로시설 31. 교량시설 32. 터널시설 33. 댐시설 34. 항만시설 35. 공항시설 36. 전기철도시설 37. 철도신호시설 39. 그 밖의 공공시설	에 너 지 · 환 경 시 설 [4]	40. 에너지공급시설 41. 쓰레기소각시설 42. 오·폐수 처리시설 43. 상수도·하수도 ·정수 시설 44. 공원시설 45. 위험물시설 49. 그 밖의 에너지·환경시설	산 업 시 설 [5]	50. 산업시설(제 조업, 플랜트 설비 포함)
--	---	------------------------------	--	-------------------------	---	---	---	-------------------------	---------------------------------

※ 유사용역의 인정범위

- 공동주택, 일반건축물 및 업무시설 : 건축물시설(20~29)
- 도시기반시설 :
 - 건축물시설(20~29)
 - 도로시설, 교량시설, 터널시설(30~32)
 - 쓰레기소각시설, 오·폐수처리시설, 상·하수도·정수시설, 공원시설(41~44)

[별표 4]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및 작성안내(필독)(제4조제1항 관련)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및 작성안내 (필독)

1.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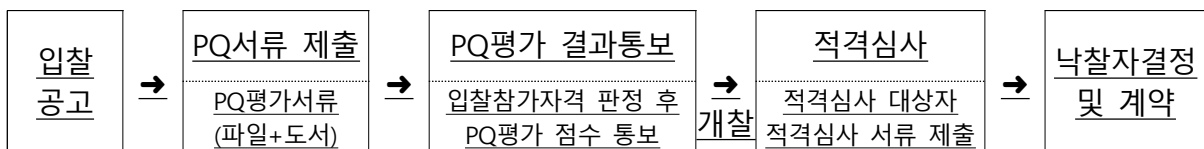
가.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상이한 내용이거나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는 실격처리 하고, 자격증·경력·실적 서류에 허위 기재한 경우는 실격, 고발, 행정처분(입찰참가제한 등)함

나. 평가서에 첨부되는 각종 증명서 제출 관련 유의사항

- 1) 참여기술인 경력증명서, 행정제재여부(부실벌점)확인서 및 참여기술인보유 현황확인서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된 원본만을 인정하고, 그 외는 필요시 원본을 징구하여 확인할 수 있음
- 2) 재정상태검토보고서는 공인회계사(세무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와 함께 제출한다.
- 3) 사본은 대표자의 원본대조필인이 있는 경우만 인정

2.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제출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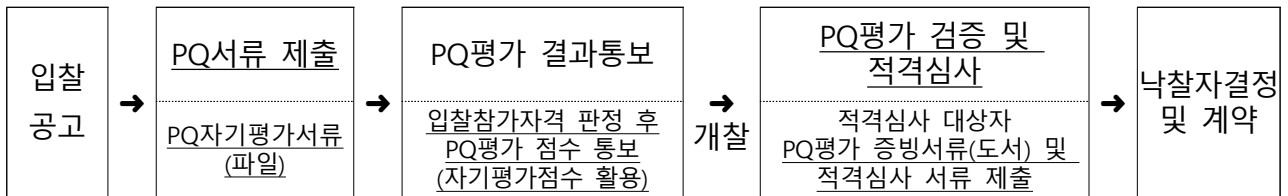
가. 입찰공고 시 제출된 모든 PQ평가서류를 평가하고, 개찰 후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



나. 제출서류

- 1) PQ평가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 사업수행능력평가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및 붙임파일, 제본도서 일체를 입찰공고문에 명시한 방법으로 제출
- 2)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 이후: 계약부서의 안내사항에 따라 적격심사서류 제출

※ 단, 제4조의2 ①에 따른 사업수행능력(PQ) 평가할 경우 신청서류 제출 안내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자기평가점수’로 평가하고, 가격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가
제출하는 PQ평가 증빙서류(도서)로 평가결과 확정하여 낙찰자를 결정



나. 제출서류

- 1) PQ 자기평가서 제출 마감일까지 : 사업수행능력평가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및 붙임파일을 입찰공고문에 명시한 방법으로 제출
- 2)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 이후: PQ증빙서류(도서) 1부(입찰참가자격서류 등 [별표5]
일체)와 계약부서의 안내사항에 따라 적격심사서류 제출
 - 규격 : A4 용지, 제본 : 좌철 (표지: 백색), 평가항목별 간지(색상지) 및 라벨
(label) 작성 부착, 참여기술인 경력 및 실적, 유사용역 해당 건에 연번 및 형광펜 표기

[별표 5] 제출서류 목록표(제4조 제1항, 제4조의2 제1항 관련)

제출서류 목록표

심사분야	연번	내 용	제출기준일	발행기관	비고
총 괄	1	전기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표지서식)		신 청 자	별지1
	2	사업수행능력평가신청서		신 청 자	별지2
입찰참가자격 관련서류	3	설계업등록증 사본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공고일	관할기관 조 달 청	
	4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개인)사업자등록증명	공고일	관할기관	
참여업체 관련서류		인감증명서	공고일 전 3개월부터	관할기관	
		사용인감계	공고일	신 청 자	
참여기술인력					
자격 또는 등급	5	전력기술인/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갑지) 또는 자격수첩 사본 기술자 보유확인서 또는 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공고일 - 개찰일	관련협회 관할기관 관련협회 관할기관	
	6	전력기술인 경력확인서(경력부분에 1회 편철)	공고일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유사용역수행실적					
실적금액 및 건수	7	설계용역수행현황확인서 발주부서업무수행확인서(진행용역)	공고일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신 청 자	별지3
수행성과	8	준공평가결과 문서	공고 시 안내	한국토지주택공사	
신용도					
영업정지	9	설계용역수행현황확인서상의 제재내역(업체) 경력확인서상의 제재내역(책임·참여기술자)	공고일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신용평가등급	10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유효기간 내	신용정보업자 인정업체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개발실적	11	신기술 인증서, 특허증 또는 실용신안등록증 등록원부 최초 출원인 확인용	공고일 공고일 전 1개월부터	관할기관	
	12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공인회계사(세무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회계사(세무사)등록증 사본	공고일	신 청 자	별지4
기술개발 투자실적					
교육실적	13	경력확인서 또는 교육훈련 수료증	공고일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업무중첩도	14	전력기술인 업무중첩도·부실벌점 확인서 감리원 업무중첩도·부실벌점 확인서 발주부서 업무수행확인서 최초·변경 계약서류 등 설계용역 중단사실 확인 공문 사본	공고일 필요시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신 청 자 발주기관 발주기관	별지3
감점					
부실벌점	15	설계용역수행현황확인서(업체) 전력기술인 업무중첩도·부실벌점확인서	공고일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입찰불참	16	입찰불참 관련문서	공고 시 안내	한국토지주택공사	
품질미흡통지서	17	품질 미흡/우수 통지서		한국토지주택공사	
기타	18	입찰공고조건상 요구 또는 기타 필요시			

※ 별도 제공되는 업체작성 엑셀파일(자기평가서)은 출력하여 평가항목별로 맨 앞쪽에 각각 편철

※ 양식이 중복되는 경우 엑셀파일만 제출 가능

[별지 제1호서식] 전기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표지서식)

<표지서식 예시>

용 역 명 ○○엔지니어링	전기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용역명 : _____ 20 . . 업체명 : ○○엔지니어링 _____

[별지 제2호서식] 사업수행능력평가신청서

사 업 수 행 능 력 평 가 신 청 서

용역명 :

위 건 용역입찰과 관련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류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 제출하오니 불임자료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입찰참가자격 관련서류(설계업등록증 사본 등) 1식.
2. 참여업체 관련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1식.
3. 자기평가를 완료한 종합평가표 1부.

20 . .

회 사 명 : (사업자번호:)
주 소 :
대 표 자 : (인)
작 성 자 : (☎:)
(E-Mail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1] 종합평가표

업체명 :

평 가 항 목		세 부 사 항			자기평가 평점	심사부서 평가	비 고
분 야 별	배 점	항 목		배 점			
1. 참여기술인력	50	가. 자격 또는 등급	책임기술자	5			절대평가
			참여기술자	5			
		나. 경력	책임기술자	10			"
			참여기술자	5			
		다. 실적	책임기술자	15			"
			참여기술자	10			
2. 유사용역 수행실적	15	가. 최근 5년간 실적금액		8			"
		나. 최근 5년간 실적건수		5			"
		다. 용역 수행성과 평가		2			"
3. 신 용 도	10	가. 영업정지		7			"
		나. 신용평가등급		3			"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15	가. 개발실적		4			"
		나. 기술개발투자실적		8			"
		다. 교육실적		3			"
5. 업무중첩도	10	가. 책임기술자		6			"
		나. 참여기술자		4			"
6. 감 점		가. 부실별점 나. 입찰 불참 다. 품질미흡통지서		최대 -5점			"
계							

※ 자기평가평점란은 참가업체에서, 심사부서평가란은 LH에서 작성(이하 동일)

상기 종합평가표는 LH의 「전기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지침」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된 것으로, 특히 신청자 자기평가평점이 위조·변조 등 부정한 서류에 의해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 (인)

[2] 항목별 세부 평가

1. 참여기술인력 평가

가. 자격 또는 등급[10점]

1) 책임기술자(5점)

구 분	배 점	평 점	평 가
		특 급(기술사)	
책임기술자	5		

2) 참여기술자(5점)

구 분	배점	평 점				평 가
		특 급	고 급	중 급	초 급	
전력기술인	3					
정보통신기술자	2					

- ※ 증빙서류 : ① 전력기술인 경력확인서
 ②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수첩 사본(원본대조필)
 ③ 재직증빙서류(건강보험가입증명서 등 공공기관발급)

나. 경력[15점]

1) 책임기술자(10점)

구 분	배점	년수	평점	평가
책임기술자	10			

2) 참여기술자(5점)

구 분	배점	년수	평점	평가
참여기술자	5			

- ※ 증빙서류 : 전력기술인 경력확인서

3) 기술자별 경력 세부내용

- 책임기술자 : ○ ○ ○

구 분	연번 (경력확인서)	참여용역명	발주처	참여기간		일수
유사용역				시작일	종료일	
계						

- 참여기술자 : ○ ○ ○

구 분	연번 (경력확인서)	참여용역명	발주처	참여기간		일수
유사용역				시작일	종료일	
계						

※ 연번은 경력확인서 비고란에 반드시 표시하고, 해당경력 형광펜 표시

※ 증빙서류 : 전력기술인 경력확인서

다. 실적[25점]

1) 책임기술자(15점)

구 분		배 점	실 적			평 점	평 가
			년수	적용율	적용년수		
유사 용역	공동주택 (일반건축물, 업무,도시 기반시설)	15		100%			
	기 타			60%			
계		15					

2) 참여기술자(10점)

구 분		배 점	실 적			평 점	평 가
			년수	적용율	적용년수		
유사 용역	공동주택 (일반건축물, 업무,도시 기반시설)	15		100%			
	기 타			60%			
계		15					

※ 증빙서류 : 전력기술인 경력확인서

※ 최근 5년간 누계실적 및 수행중인용역의 기성실적기간 인정

3) 기술자별 참여 실적

- 책임기술자 : ○ ○ ○

구 분		연번 (경력확인서)	설계용역명	발주처	참여 분야	참여기간		일수
유사 용역	공동주택 (일반건축물, 업무,도시 기반시설)					시 작 일	종 료 일	
	소 계							
	기타					시 작 일	종 료 일	
	소 계							

※ 증빙서류 : 전력기술인 경력확인서

※ 해당실적에 유사용역 종류별로 색구분하여 형광펜 표시

- 참여기술자 : ○ ○ ○

구 분		연번 (경력확인서)	설계용역명	발주처	참여 분야	참여기간		일수
유사 용역	공동주택 (일반건축물, 업무,도시 기반시설)					시 작 일	종 료 일	
	소 계							
	기타					시 작 일	종 료 일	
	소 계							

※ 증빙서류 : 전력기술인 경력확인서

※ 해당실적에 유사용역 종류별로 색구분하여 형광펜 표시

2.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 [15점]

가. 최근5년간 유사용역 실적금액[8점]

유사용역 누계실적금액(A)	해당설계 용역비(B) (설계가격)	환산율(%) (A/B)*100	배 점	평 점	평 가
			8		

- 유사용역 수행실적

구분		연번 (실적 확인서)	설계용역명	발주처	참여 분야	용역 기간	용역금액 (공동도급 지분구분)	적용율 (%)	적용 금액
유 사 용 역	공동주택 (일반건축 물,업무, 도시기반 시설)							100	
	소 계								
	기타							60	
	소 계								
계									

※ 증빙서류 : ① 설계용역수행현황확인서(한국전기기술인협회 발급)

② 발주부서업무수행확인서(현재 진행중인 설계용역)

※ 공통사항 : 최근 5년간 1천만원 이상의 준공한 용역 및 1천만원 이상인
현재 수행중인 유사용역 작성하고, 증빙서류에 형광펜표시

나. 최근5년간 유사용역 실적건수[5점]

유사용역 누계실적건수	배점	평점	평가	비고
_____건	5			

- 유사용역 수행실적

용역명	연번 (실적 확인서)	설계 용역명	발주 처	참여 분야	용역 기간	적용율 (A)	공동도 급비율 (B)	기성율 (C)	건수산정 (A*B*C)*1
전 기 분 야	공동주택 (일반건축물, 업무,도시기 반시설)					100			
	소 계								
	기타					60			
	소 계								
계									

※ 증빙서류 : ① 설계용역수행현황확인서(한국전기기술인협회 발급)

② 발주부서업무수행확인서(현재 진행중인 설계용역)

※ 공통사항 : 최근 5년간 1천만원 이상의 준공한 용역 및 1천만원 이상인
현재 수행중인 유사용역 작성하고, 증빙서류에 형광펜표시

다. 용역 수행성과 평가[2점]

- 최근 3년간 획득한 LH 전기설계용역 준공평가 결과

업체명	용역평가 결과			등급	공동도급 비율	평 점	평가
	전기설계 용역명	평가결과 통보일	평가 점수				
산술평균							
산술평균							
계							

- ※ 용역 수행성과를 평가 할 경우 입찰공고문에 별도 명시하고, 입찰공고문에 별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배점한도(A 등급)를 적용
- ※ 사업자별 용역평가결과는 산술평균하며, 공동이행의 경우 사업자별 용역평가 결과에 지분율을 반영하여 합산 후 등급산정
- ※ 증빙서류 : LH 평가결과 공문 및 평가표(한국토지주택공사 발급)
- ※ 공통사항 : 최근 3년간 평가결과가 없는 경우 80점 이상(B 등급)을 적용

3. 신용도 평가 [10점]

가. 영업정지(또는 기술자격 정지)(7점)

구 분		정지기간			배점	감점	공동도급 비율	평 점	평 가
		시작일	종료일	일수					
사 업 자					4				
사업자 소개									
기 술 인					3				
기술인 소개									
계									

- ※ 증빙서류 : ①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발행 설계용역수행현황확인서상의 제재내역(설계업체)
② 전력기술인 경력확인서상의 제재내역(책임·참여 기술자)

나. 신용평가등급(3점)

신용평가회사	평가등급	배 점	평 점	평 가
		3		

※ 증빙서류 :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평가[15점]

가. 개발실적(4점)

구분	기 술 명	최초 지정 (출원)일자	경과 기간	출원 인수	배점	평점	평가
신기술 인증							
특허							
실용신안							
계					4		

※ 증빙서류 : 신기술 인증서, 특허증 또는 실용신안등록증과 최근 1월 이내에 관할기관에서 발행한 등록원부 및 최초출원인 확인서를 제출

나. 기술개발투자실적(8점)

년도	기술개발 투자액(A)	전기부분 총매출액(B)	비 율 (A/B)×100	배점	평점	평가	비고
				8			
소계				8			

※ 증빙서류 :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별지 제4호서식), 공인회계사(세무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교육실적(3점)

구 분 (교육이수)	이수인원 (A)	평가대상 인원수(B)	배점(C)	평점 (A/B)×C	평가	비고
2주이상			3			
1주이상 2주미만			1.5			
소 계			최대 3점			

※ 증빙서류 : 전력기술인 경력확인서(한국전기기술인협회 발행) 또는 전력기술인단체에서 실시하는 전기설계, 설계감리 교육훈련 수료증

5. 업무중첩도 평가[10점]

가. 평 가

구 분	배점	건수	적용점수	평점	평가	비고
책임기술자	6		-0.3/건			
참여기술자	4		-0.2/건			
소 계	10					

나. 용역수행 현황

1) 책임기술자 : ○ ○ ○

용역명	용역 기간		잔여기간 (일수)	용역금액	기성금액	잔여금액 (억원)	비고
	시 작 일	종 료 일					용역수행중이거나 계약예정인 모든 용역 표기 및 미적용 사유 명기
소 계							

2) 참여기술자 : ○ ○ ○

용역명	용역 기간		잔여기간 (일수)	용역금액	기성금액	잔여금액 (억원)	비고
	시 작 일	종 료 일					용역수행중이거나 계약예정인 모든 용역 표기 및 미적용 사유 명기
소 계							

- ※ 증빙서류 : ①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 업무중첩도·부실벌점 확인서(입찰공고일 기준)
 ②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미신고시 제출서류(별지 제3호서식 발
주부서업무수행확인서 또는 최초·변경 계약서류 등)
 ③ 설계용역 중단사실 확인자료(관련 공문사본)

6. 감점 평가 [최대 -5점]

가. 부실벌점

구 분		감점 점수	평점	평가	비고
부 실 벌 점	용역업체	-			
	책임기술자	-			
	참여기술자	-			
계		최대-5점			

- ※ 증빙서류 : ① 설계용역수행현황확인서(업체 부실벌점)
 ② 전력기술인 업무중첩도·부실벌점 확인서(입찰공고일 기준)

나. 입찰에 불참한 자

입찰불참 업체	감점 점수	평점	평가
계			

※ 증빙서류 : 입찰불참 관련문서

다. 품질미흡통지서

업체명	품질 미흡/우수 통지서	감점(상쇄) 점수	공동도급 비율	평 점	평가
계					

※ 증빙서류 : 품질 미흡/우수 통지서(한국토지주택공사 발급)

[별지 제3호서식] 발주부서 업무수행확인서

발주부서 업무수행확인서

☐설 계 ☐설계감리 용역수행사실확인서(발주자 확인용)						
발주자	회 사 명			법인(사업)번호		
	대 표 자	(전화번호:)				
	소 재 지					
설계업체	회 사 명			업등록번호		
	대 표 자	(전화번호:)				
	소 재 지					
용역수행사실내용	①구 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기본+실시설계 ☐ 기타()				
	②용역명					
	③용역개요	○ 전기설비 : 간략히 기재				
		○ 내 용 : 간략히 기재				
	④계약내용	○ 형태 : ☐ 단독, ☐ 공동·승계(이행비율: %) (공동·승계업체 업등록번호 및 업체명:)				
		○ 용역비 : 천원, ○ 기간 : ~				
	⑤계약이행내용	구 분	금액(천원)	수행 또는 계약기간		비 고
		기성분				합산기재
		계약잔여분				
		총 괄				
⑥참여전력기술인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용역기간	비 고	
발주자 확 인	위와 같이 설계·설계감리용역 수행사실 내용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발주자명: (인) 발급확인부서(연락처) : () 담당자명: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재정상태검토보고서

재정상태검토보고서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1. 설계(감리)업체					
상 호		업등록번호		대표자	
주 소				사업(법인)등록번호	
2. 경영상태 검토내용					
구 분	비율(%)	산출근거(단위: 백만원)			
자기자본비율 (최근년도)	법인 (회사단위)	자기자본		총자산	
유동비율 (최근년도)	법인 (회사단위)	유동자산		유동부채	
매출액 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매출액	
총자본회전율		총매출액		총자본	
기술개발투자 실적 (최근 3년)	A÷B (%)	기술개발투자실적(전기부문)		총매출액(전기부문)	
		합계금액(A)		합계금액(B)	
		3차년	투자액	3차년	총매출액
		2차년	투자액	2차년	총매출액
		1차년	투자액	1차년	총매출액
3. 검토기준					
가. 결산서 작성사유 : 나. 결산서의 종류 : 다. 결산서 작성년월일 : 라. 기타					
※ 비고 : 결산서의 종류에 대한 세부기준은 주기에 따른다. 상기 내용은 위 기재회사의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기검토보고서 작성절차 또는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작성한 것에 한함)나 세무사(「세무사법」 제2조제7호에 따라 본인이 작성한 것에 한함)가 작성하였음을 확인하며 이 재무상태 검토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연락처 : 공인회계사, 세무사 : (인)					

첨 부 : 공인회계사(세무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